

[]제조소
위험물 []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
[]취급소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뒤쪽 작성방법 등 제7호 참조 |
| 허가번호 | 허가일자 | |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설치자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 (전화번호 :) | |
| 설치장소 | | |
| 설치장소의 지역별 | 방화지구 여부 | 용도지역 등 |
| 제조소등의 구분 |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| |
| 위험물의 유별·품명 (지정수량) 및 최대수량 | 지정수량의 배수 배 | |
|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 | | |
|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개요 | | |
| 위험물의 저장·취급 방법의 개요 | | |
| 착공예정 연월일 | 년 월 일 |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|
| 그 밖에 필요한 사항 | | |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(전화번호:)
성명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 귀하

| | | |
|------|-------|--|
| 첨부서류 | 뒤쪽 참조 | 수수료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5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|
|------|-------|--|

첨부서류

-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
 -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
 -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
 -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(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)
 -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, 공작물 및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(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V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)
 -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, 피뢰설비, 소화설비,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
 - 압력안전장치·누설검지장치·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
-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
- 소화설비(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)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
-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
-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·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, 공사계획서, 공사공정표,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·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
-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·갱도(坑道)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, 공사계획서, 공사공정표 및 지질·수리(水理)조사서
-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(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)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, 공사계획서,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
-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[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(定置)되어,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]인 경우에는 해당 해상탱크의 탱크본체·정치설비(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)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,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
-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(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작성방법 등

- 이 설치허가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.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,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용도지역 등란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 용도지역,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.
-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의 해당규정을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-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.
 -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: 3일
 - 가목 외의 경우: 5일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